

# 고성군 조례 · 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659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8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6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재정이유

-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·개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·규칙을 입안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예고대상 및 미예고시 권고사항(안 제3조)
- 나.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등 예외사항(안 제4조)
- 다. 고성군 공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예고방법(안 제6조)
- 라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 예고(안 제7조)
- 마. 주민의 의견제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및 조치사항(안 제8조)

### 4. 검토의견

-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도록 행정절차법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에 명시하였고, 법제업무운영규정('97. 12. 31전문개정 : 대통령령 제15602호) 제20조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치 않음으로서
- 최근에는 처분절차(사전통지, 의견청취 등), 행정예고, 행정상 입법예고결여 등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정심판 등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자

- 경상남도 법무 12440-11292(2000. 10. 17)호로 전 시·군에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.
-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오늘까지 조례의 근거도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인지
- 답 :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임. 그러나 최근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소 결함이 있다는 판결이 있음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함.
- 문 :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요 조례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등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
- 답 : 입법예고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